

제 정	2003.	9.	29.
40차개정	2023.	12.	28.
41차개정	2024.	7.	1.
42차개정	2026.	2.	20.
43차개정	2026.	4.	1.
전부개정	2026.	8.	1.

열공급 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구역)	1
제3조(규정의 신고 및 변경)	1
제4조(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1
제5조(용어의 정의)	2

제2장 열사용신청과 열수급계약

제6조(열사용신청)	6
제7조(열사용신청의 검토 및 거부)	8
제8조(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	9
제9조(계약종별)	9
제10조(열수급계약의 성립 및 계약기간)	10
제11조(관리업무 인계통지)	11
제12조(명의변경)	11
제13조(사용자의 신청에 따른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	12
제14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	13
제15조(열수급계약 해제후의 재신청)	14
제16조(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재사용 등)	15
제17조(열수급계약 해제·해지 이후의 채권·채무)	16

제3장 공 급

제18조(공급기간 등)	18
제19조(대체 열공급 요청 등)	18
제20조(공급조건)	18
제21조(계량기 봉인 및 봉인기간 요금)	19
제22조(공급개시)	20
제23조(열공급개시예정일의 변경 등)	21
제24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22
제25조(공급의 재개)	23
제26조(공급중지 및 사용제한)	23
제27조(공급중지기간 중 사용자 보호대책)	24
제28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	25

제4장 시공 및 유지관리

제29조(재산한계점)	26
제30조(사용자기계설 등의 출입)	26
제31조(공사)	27
제32조(공사대행에 따른 비용부담)	28
제33조(교체비용 등의 부담)	28
제34조(계량기의 설치 등)	29
제35조(열사용시설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29
제36조(사용자의 열사용시설 운영)	30

제5장 분담금 등

제37조(공사비의 부담원칙 및 사용원칙)	31
제37조의2(초과공사비)	31
제38조(분담금의 회계분리 및 공개)	31
제39조(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32
제40조(분담금의 조정)	34
제41조(분담금의 계산단위)	35
제42조(분담금의 납부 및 납기일)	35
제43조(분담금의 납부비율)	37
제44조(분담금의 정정청구)	38
제45조(분담금의 정산)	39

제6장 요 금

제46조(요금의 적용개시일 및 계산)	41
제47조(기본요금의 정산)	42
제48조(요금의 감면)	43
제49조(특별요금감면)	46
제50조(위약금 등)	46
제51조(요금의 조정)	47
제52조(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의 조정)	48
제53조(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 변동에 따른 요금의 조정)	50

제54조(요금정산)	51
제55조(시장기준요금)	53
제56조(요금 조정절차)	53
제57조(요금 검증)	53
제58조(그 밖의 요금조정)	54
제59조(수요관리형요금제도)	54
제60조(검침일)	55
제61조(검침방법 및 열사용량의 계량)	56
제62조(요금의 계산기간)	56
제63조(계량기 고장 등의 경우에서 열사용량의 계량)	57
제64조(요금의 납부)	58
제65조(연체료)	59
제66조(일부납부에 따른 처리)	60
제67조(이의제기 및 채부과)	61
제68조(보증금)	62
제69조(일수계산)	63
제70조(요금의 계산단위 등)	64
제71조(이자의 지급)	64

제7장 열사용에 따른 사용자 의무

제72조(열사용시설기준)	66
제73조(사용자의 의무)	66

제8장 열사용에 따른 안전

제74조(안전관리 책임한계)	67
제75조(통지)	67
제76조(열사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권고)	67

제9장 사용자정보의 보호

제77조(사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68
제78조(영업의 양도 등의 통지)	69

제10장 기타

제79조(문서의 보존)	70
제80조(규정의 공표 및 중요정보의 고지)	70
제81조(손해배상)	70
제82조(손해배상의 면책)	71
제83조(위임)	71

부 칙	72
-----------	----

[별 표]

[별표 1] 계약종별 분류표	73
[별표 2] 분담금 부과기준	74
[별표 3] 열요금표	75
[별표 4] 단위연결열부하 기준표	76

<별 지 서 식>

<별지서식 제1호> 열사용신청서	78
<별지서식 제2호> 열수급계약서	80
<별지서식 제3호> 사용자명의변경 신청서	82
<별지서식 제4호> 증설·변경·재사용 신청서	83
<별지서식 제5호> 열수급계약 해제·해지 신청서	84
<별지서식 제6호> 관리업무 인계 통지서	85
<별지서식 제7호> 점검필증	86
<별지서식 제8호> 확약서	87
<별지서식 제9호> 열사용량 확인서	8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열공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합니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열을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에게 열을 공급 할 때의 요금,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공급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구역) ① 이 규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지역을 포함합니다)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급구역에 대한 도면은 사업자가 비치합니다.

제3조(규정의 신고 및 변경) ① 이 규정은 법 제17조 제1항·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합니다) 하였습니다.

② 이 규정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급규정에 따라 공급합니다.

④ 사용자는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4조(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

우 이 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열매체

열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가열한 물(이하 “온수”라 합니다), 증기 등을 말합니다.

2. 열원시설

열매체를 가열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 가. 열발생설비 : 터빈·발전기, 보일러 및 기타 열매체를 생산하는 설비
- 나. 기타 열원시설 :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및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3. 열수송시설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수송관, 순환펌프 및 그 밖의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관은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주배관 : 열원시설간의 열수송관과 열원시설로부터 분배관까지의 열수송관

나. 분배관 : 주배관으로부터 사용관까지의 열수송관

4. 사용관

사용자가 열을 공급받기 위하여 분배관과의 접속지점으로부터 매설 또는 설치하는 배관과 그 부속기기를 말합니다.

5. 열공급시설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및 그 밖의 열매체의 공급과 관련된 사업자 소유의 시설을 말합니다.

6. 열사용시설

사용관, 열교환설비 및 그 밖에 열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 소유의 시설을 말합니다.

7. 계량기

열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하여 사용자측 기계실 등에 설치하는 거래용 열량계(유량부, 연산부 또는 온도감지기 등)를 말합니다.

8. 공고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합니다.

9. 공급구역

공고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중에서 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지역과 시행규칙 제9조 따라 신고한 지역을 말합니다.

10. 원격검침

사업자가 신호전송설비 등을 이용하여 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증설사용

열공급이 개시된 이후에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재사용

열공급이 개시된 이후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된 동일 사용자가 동일장소에서 해지된 부분에 다시 열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변경사용

계약종별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4.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이하 “분담금”)

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말합니다.

14의2. 사용용도

법 제16조의2 제2항제1호의 “사용용도”는 별표1의 계약종별을 의미합니다.

15. 계약면적

주택용 분담금과 주택용 기본요금의 부과단위를 말합니다.

16. 계약용량

열교환기용량으로서 업무용·공공용 기본요금의 부과단위를 말합니다.

17. 연결열부하

업무용·공공용 분담금의 부과단위를 말합니다.

18. 난방비수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난방용 열수요가 적은 기간으로서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19. 건축물 : 공동주택과 건물로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제외)

나. 건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20. 신축 :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 이전의 건축물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사용자 소유의 열생산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다.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열수급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새로이 열수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축물

21. 기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2. 착공일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 허가권자로부터 발급받은 착공신고필증 발급일을 말합니다. 다만, 착공신고필증 발급일과 실제 착공일이 차이가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착공일을 말합니다.

23. 열공급개시

분담금 잔금(할부금 제외)을 완납한 사용자에게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를 개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사용자개인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그 정보만으로는 특정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25. 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26. 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27. 리모델링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8.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제2조 제6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합니다.

제2장 열사용신청과 열수급계약

제6조(열사용신청) ① 사용자가 열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열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이하 “열사용신청”이라 하며, 증설사용, 재사용, 변경사용을 포함합니다) 미리 이 규정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열사용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공고지역 내 열사용신청자에게 신축 건축물의 착공일이전 까지 열사용신청안내(이 경우 분담금 계약금 정상납기일 초과일수에 따른 연체료 부과내용을 포함합니다)를 해야 합니다.

④ 열사용신청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청서를 사업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공고지역내 열사용신청자 : 신축하는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2. 공고지역외 열사용신청자 : 열사용 신청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⑤ 제2항에 따른 열사용신청 명의를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신축 공동주택

- 가.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의 정의(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 나. 사업주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 다.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 위·수탁자 공동 명의
- 라.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와 사업시공자 공동명의

2. 기존 공동주택

-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 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신축 건물

- 가. 건축주, 시행사 등 이에 준하는 자 및 시공사 공동명의
- 나.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 위·수탁자 공동 명의

4. 기존 건물

- 가. 소유자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임시)관리인 포함)의 명의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소유한 건물을 하위 행정관청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 행정관청의 명의(하위 행정관청에 준하는 자를 포함)
- 다.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위주로 건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 위주의 사단·조합 명의

⑥ 사용자는 열사용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구비 서류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열사용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보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열사용신청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사업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제출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⑦ 제6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확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⑧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열사용신청의 검토 및 거부) ① 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열사용신청에 대하여 열사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를, 설계도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각각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열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3.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용량(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경한 공급용량을 포함합니다)을 초과하여 열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4.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열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열사용시설이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열사용시설기준(이하 “열사용시설기준”이라 합니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공급을 승낙하면 이미 열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단, 열사용신청자가 그 불이익을 해소할 경

우는 예외로 합니다)

7. 이 규정 이외의 조건으로 열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제8조(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 ① 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 :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분되거나 단일회계 주체로 관리되는 구역(이하 “구내” 라고 합니다)

2. 건물 : 하나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복수의 체결단위를 하나의 체결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계약체결 단위를 구분하거나, 복수의 체결단위를 하나의 체결단위로 하여 열수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건축물내에 여러 개의 계약종별이 있는 경우

2.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건축물 내에 여러 개의 용도로 건축물을 구분하여 사용할 때 계약체결단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복수의 주택단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체결단위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9조(계약종별) ① 계약종별은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적용대상은 별표 1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② 여러 개의 열사용용도가 있는 하나의 건축물에서 열교환기 및 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계약종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주된 열사용 용도비율이 전체 열사용용도의 100분의 95 이상인 사용

자의 경우 : 주된 열사용 용도

2. 주된 열사용 용도비율이 100분의 95미만인 사용자의 경우 : 각각의 용도별로 계약종별을 구분 표시하여 계약(이 경우 분담금 및 기본요금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부과하고 사용요금은 주된 열사용 용도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열사용 용도는 열교환기용량이 큰 경우를 말하며, 열교환기용량이 동일하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결열부하, 열사용면적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④ 열수급계약 체결이후 계약종별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 계약종별의 적용을 열수급계약 체결당시부터 소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열수급계약의 성립 및 계약기간) ① 열수급계약(변경계약 포함)은 사업자가 날인한 열수급계약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날에 성립하며, 사업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열수급계약서를 송달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날인하여 사업자에 송부해야 합니다.

③ 열수급 계약기간은 열수급계약이 성립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④ 열수급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열수급계약의 해지나 변경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소유의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열을 공급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열공급개시예정일, 분담금 및 열요금 납부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11조(관리업무 인계통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리업무 인계·변경내용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사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선임 사실,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임한 사실(변경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건물의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사실(변경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12조(명의변경) ① 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명의를 변경하여 열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운 사용자가 종전 사용자의 명의로 열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명의변경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새로운 사용자가 명의변경신청서 제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명의변경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제10조에 의한 열수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⑤ 새로운 사용자가 명의변경에 따른 요금의 구분 청구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사용자 변동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동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법인 대표자 등의 변경은 명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⑦ 명의변경은 제6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⑧ 명의변경신청은 변경전 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가 모두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전 사용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날인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용자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사용자의 신청에 따른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 ①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해제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열수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신청서가 사업자에 접수된 날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②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자는 분배관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 등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출비용을 사용자가 납부한 분담금에서 상제한 후,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청구합니다.

③ 사용자가 열공급개시 이후 열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에 열수급계약해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해지신청서의 해지희망일까지 사업자측 차단밸브의 폐쇄,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의 철거 등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해지희망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의 사유로 인해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3. 사업자와 사용자간 협의로 조치 완료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 ⑤ 사업자는 분배관의 철거여부 및 철거시기 등을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⑥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에도 불구하고,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 ① 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분배관공사를 지연 또는 중지시키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할 수 없을 경우
2. 열사용시설이 이 규정과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열공급을 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3.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 부담해야 할 비용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자는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업자가 해제사유를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지한 날로부터 7일 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해제사유 해소일을 명시하여 사업자에 통지 해야 하며, 해제사유 해소일까지 해제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7일후 또는 사용자가 명시한 해제사유 해소일 중 늦은 날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봄

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과 제5항을 준용합니다.

⑤ 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24조에 따라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지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열공급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사용자가 없어 열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3. 분담금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부도 등으로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될 경우
5. 사용자가 그 소유의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열을 공급할 경우
6. 그 밖에 사용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합니다.

⑦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 에도 불구하고,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제15조(열수급계약 해제 후의 재신청) ①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고객이 다시 열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합니다.

② 공고지역 내에서 열수급계약 해제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고객이 열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및 제65조 제6항을 적용함

니다.

③ 공고지역 내에서 열수급계약 해제 후 동일한 장소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주의 변경으로 새로운 열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일을 착공일로 봅니다.

제16조(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재사용 등) ①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자의 신청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재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이후 재사용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 분배관 실공사비용(분배관을 철거한 경우에 한합니다)
2.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1년 이내에 재사용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열수송관 해제비용
4. 열사용시설 점검비용
5. 그 밖에 재사용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③ 사업자는 재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받은 비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사용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가 재사용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13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⑤ 재사용 사용자가 새로운 열수급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계산은 신축 분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⑥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장소에서 열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 열사용신청자가 해지된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경우에는 명의가 달라도 재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⑦ 제14조에 따라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재사용신청 전에 해지사유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⑧ 제5조 제25호부터 제2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수급계약이 전부 해지된 후 새로이 열수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⑨ 동일 장소에서 열사용신청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는 신규사용으로 봅니다.

제17조(열수급계약 해제·해지 이후의 채권·채무) ① 이 규정에 따라 열수급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요금 및 그 밖의 채권과 채무(사업자의 열공급의무는 제외합니다.)는 열수급계약의 해제·해지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② 열공급개시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열사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한 분배관공사 등의 실공사비(기본설계용역비 포함)를 사용자가 기납부한 분담금에서 정산한 후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정산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금액이 포함된 분담금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제4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합니다.

④ 열공급개시후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열수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열수급계약 해지일 전에 미납된 분담금(할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제3장 공 급

제18조(공급기간 등) 사업자는 열수급 계약기간동안 계절, 시기 및 시간 등의 제한없이 계속하여 열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열공급 시설에 대한 공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조건, 공급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대체 열공급 요청 등) ① 사업자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대한 정상적인 열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열공급이 가능한 타 사업자(이하 “대체사업자”라 합니다)를 통한 열공급(이하 “대체 열공급”이라 합니다)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체 열공급을 요청한 경우, 대체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대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열공급시설의 이용 제공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사전에 완료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협조합니다.

③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대체열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공급조건) ① 사업자가 공급하는 열매체의 온도와 압력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1. 온도 : 재산한계점 또는 사용자설비와 가장 인접한 분배관의 계측 가능한 지점에서 사업자가 30분동안 측정한 온도의 평균치

구분		온도	
난방용	공급온도	75℃ ~ 115℃	
	회수온도	35℃ ~ 55℃	
냉방용	공급온도	95℃ ± 3℃	
	회수온도	1단 흡수식냉동기	최고 80℃

2. 압력 : 사용자기계실내의 열교환설비에서 사업자가 30분동안 10분간격으로 측정한 압력의 평균치

구 분	온 도
공급관	최대 1.6MPa(16bar)
회수관	최대 1.6MPa(16bar)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기온도에 따라 저부하로 공급되는 시간대에는 사용자의 열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급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계량기 봉인 및 봉인기간 요금) ① 사업자는 열공급을 개시하기 이전에 계량기의 봉인상태를 확인합니다.

② 사용자는 열사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날(이하 “열 사용 정지 희망일”이라 합니다)로부터 3일 이전까지 계량기에 대한 봉인을 신청해야 하며, 열 사용 정지 희망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봉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을 사용자의 열 사용 정지 희망일로 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사용자의 열 사용 정지 희망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④ 사업자는 봉인기간 중에는 기본요금만을 부과합니다.

⑤ 사용자는 열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 이전까지 사업자에 계량기의 봉인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3일 이전까지 봉인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신청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을 열 사용 희망일로 봅니다.

⑥ 봉인기간 동안의 열사용량 산정은 제63조를 준용합니다.

제22조(공급개시)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1. 열사용시설을 점검하여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열공급개시일 이전에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
3. 계량기의 봉인이 파손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공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서상에 명시된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열공급개시예정일이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토요일 또는 사업자의 휴무일(이하 “휴일”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 날중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열공급을 개시합니다.

④ 사업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며,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 부과시 상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행정기관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열공급개시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못한 경우 : 열공급개시예정일의 5일 이전 일로부터 열공급개시 전일 까지
2.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한 경우 :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 전일 까지

제23조(열공급개시예정일의 변경 등) ① 열공급개시예정일의 연기를 희망하는 사용자는 당초 열공급개시예정일의 전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최초 열공급개시예정일로 부터 4개월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사업자는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열공급개시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사용자는 최초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
2.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열사용시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분담금을 완납하고, 최초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열공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열공급개시예정일의 전일까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초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를 제외한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

하여 최초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이후 열공급이 개시된 경우, 사용자는 4개월을 초과하는 날부터 실제 열공급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4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지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안전상의 위험으로 인해 긴급을 요할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장소내에 있는 열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사용자가 열사용시설 또는 열공급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으로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사용자가 열요금을 연체납기일로부터 14일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 주택용 사용자는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열공급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된 경우 열공급을 시간대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개선권고와 제76조에 따른 개선권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 또는 따르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발생이 예상될 경우
6. 사용자가 제68조에 따른 보증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자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용자에게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의 열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계약된 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배하여 열을 사용하였을 경우
4. 제30조에 따른 사용자기계설 등에 대한 출입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을 경우
5. 열사용시설이 제36조를 위배하여 열손실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25조(공급의 재개) ① 사업자는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열수급계약 해지 이전에 정지사유를 해소하고, 납부할 요금, 분담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그 밖에 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비용을 모두 납부한 경우 열공급을 재개합니다.

②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제16조 2항을 준용합니다.

제26조(공급중지 및 사용제한)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국가적인 에너지 비상 수급사태로 에너지 수급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4. 열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공급시설의 정기점검, 수선, 보수 및 그 밖에 공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그 밖에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지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한 후 24시간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
 2.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
 3. 그 밖에 열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③ 열공급 중지 및 열 사용제한 기간이란 연속하여 중지 또는 제한된 시간을 말합니다.
- ④ 열공급의 중지 또는 열사용의 제한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조속한 시간 내에 열공급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27조(공급중지기간 중 사용자 보호대책) ① 열공급 중지나 열사용 제한에 따른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난방보조기구 대여 등 사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사용자보호대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8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 ① 사업자가 제2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합니다. 다만, 제2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② 사업자가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초과시간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초과시간은 사전에 약속된 열공급중지 종료시간 후부터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를 다시 개방한 시간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 ③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기본요금 감면 최대 한도는 월 기본요금 총액으로 합니다.
- ⑤ 제48조에 따른 기본요금 전액감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상당금액을 사용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시공 및 유지관리

제29조(재산한계점) ① 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단밸브는 사용자의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근접한 지하구조물의 외벽2미터밖에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차단밸브의 설치위치와 열수송관의 매설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기계실의 주변여건에 따라 외벽의 2미터밖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지하의 장애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열공급시설, 열사용시설의 공사시기의 차이에 따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변경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열공급을 위하여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누수감지설비 등의 열공급시설은 사업자의 소유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하는 열공급시설의 목록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하구조물의 내벽 1미터까지 사용관 매설공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슬리브설치공사와 마감공사(방수공사 포함)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제30조(사용자기계실 등의 출입)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시설(법 제2조 제7호의 사용시설을 의미합니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용자기계실 등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

이 사업자의 출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기계실 인입배관공사 또는 열공급시설의 공사, 설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 규정에 위배되는 열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사용시설을 검사하는 경우
3.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등의 설치, 검침,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3조, 제14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사용자 열사용시설의 안전점검 및 효율적 사용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경우

제31조(공사) ①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사업자와 사용자는 각각 시공과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제1호는 사업자에게, 제2호와 제3호는 사용자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1. 제29조 제3항에 따른 설비
2.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공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한 인입배관
3. 그 밖에 이 규정 이외의 특약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의 공사를 대행한 경우

②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차단밸브와 사용관의 연결공사는 사업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합니다.

③ 사용자는 열사용시설의 설계·시공을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32조(공사대행에 따른 비용부담)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대행할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2. 사용관의 누수, 기타 열사용시설의 파손·고장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 또는 열사용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대행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제33조(교체비용 등의 부담) ① 사용자의 사정으로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때 또는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이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② 공고지역내의 사용자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증설 등을 할 경우에는 분담금 이외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열수송관의 철거 및 폐기비용(잔존가액 제외)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③ 공고지역 이외의 사용자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증설 등을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체, 이설비용(기존배관 잔존가액 및 타사용자를 위한 열수송관 이설비용은 제외) 등은 실공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자와 공사비를 정산하며,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정산일로부터 지급일까지 해당하는 일수에 제71조 제2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34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계량기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설치·관리 하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사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가 쉬운 곳에 설치합니다.

② 사용자는 사업자가 설치한 계량기의 계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중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기관이 시행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에게 검사기관과 검사일시 등을 검사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통지하고,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임회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용오차 이내일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교체 비용 및 시험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⑤ 사용자가 소유·관리하는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사업자의 계량기와 구분되도록 열교환설비 이후 2차측에 설치해야 합니다.

⑥ 사용자는 계량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원격검침용 설비(무선중계기, 안테나 및 케이블포설 공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5조(열사용시설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① 사용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합니다) 및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열사용시설을 설계, 시공 및 유지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열사용시설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점검결과를 통지하고,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은 점검필증(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합니다.

③ 사업자는 열사용시설 점검결과 기술기준 및 열사용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사용자의 열사용시설 운영) ① 사용자는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열사용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1. 난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운영

2. 급탕

가. 기계실공급방식 : 공급온도가 하절기에는 50℃ 이상, 동절기에는 55℃ 가 되도록 운영

나. 통합배관방식 : 세대에서 45℃ 로 운영

3. 냉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운영

4. 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pH)8이상, 탁도(FTU)10 이하, 칼슘경도(Ca-H)50mg/L as CaCo3이하, 철(T-Fe)1mg/L as Fe이하, 염소이온농도 180mg/L 이하

② 사용자는 제1항 제4호의 수질기준에 따라 연간 1회이상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체의 수질검사를 시행한 후 수질시험성적서를 기계실에 비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5장 분담금 등

제37조(공사비의 분담원칙 및 사용원칙) ① 열공급시설의 공사비는 법 제 16조의2에 따라 사업자와 사용자가 분담하고, 열사용시설의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용자가 분담한 분담금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열공급시설의 건설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37조의2(초과공사비) ① 공고지역 이외의 공급구역내 공동주택 및 건물과, 공고지역 내 단독주택의 경우 열공급을 받기 위한 실공사비(기본설계용역비를 포함합니다)가 분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고 사업 경제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초과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관련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 신규수요의 확보를 위해 열공급이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 사용자가 지역난방 열수급을 위해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한 설비이외에 설치한 설비가 열공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38조(분담금의 회계분리 및 공개) ①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비용의 분담금과 타 법률에 의한 부담금
2. 법 제2조의 열공급시설과 다른 유무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가상각비

② 분담금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1. 당기 수령액 및 회계기간 말 미사용 잔액
2. 법 제2조의 열공급시설의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
3. 이연수익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연수익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
4. 자산차감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열공급시설 에서 차감 표시하는 분담금의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내역

제39조(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① 사업자는 법 제16조의2 및 집 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분담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② 계약면적을 부과단위로 하는 경우 계약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최초 산정 이후 감소 및 증가되는 면적은 제45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각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

③ 연결열부하를 부과단위로 하는 경우, 분담금은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연결열부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부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다음에 따라 산정 및 부과한 후, 제45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이 경우 주차장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주차장 면적만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열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장면적에 포함하며,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층별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단위연결열

부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연면적 - 주차장면적) × 단위연결열부하(별표4) × 0.8

⑤ 사용자는 열사용신청서와 함께 계약면적 확인을 위한 서류 및 건축물현황도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라 합니다)가 작성 또는 확인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⑥ 제5항의 계약면적 다음 각호의 서류로 확인하며, 그 우선순위는 각 목의 순서에 따릅니다.

1. 신축 건축물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와 기본설계도서

2. 기존 건축물

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합니다)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9조에 따른 건축물 현황도(이하 “건축물 현황도”라 합니다)

나. 등기부등본

⑦ 제2항의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를 최초로 산정할 때 사업자와 사용자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제3의 건축물 현황도 작성 권한자를 선정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관련비용은 사업자와 사용자가 균분하여 부담하고, 산정 이후 면적을 추가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면적을 제외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각각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⑧ 열사용신청자중에서 온수를 열매체로 하여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방용 부과단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며, 냉방용과 관련된 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⑨ 증설사용,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담금 부과단가는 별표2의 신축단가를 적용합니다.

1. 증설사용의 경우

(증설사용분을 포함한 분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분담금 부과단가) - (증설사용분을 제외한 분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분담금 부과단가)

2. 변경사용의 경우

(변경될 분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분담금 부과단가) - (변경되기 이전의 분담금 부과단위 × 변경계약일 현재의 분담금 부과단가)

3. 재사용의 경우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분담금 부과단위 ×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분담금 부과단가) - (열수급계약 해지 당시의 분담금 부과단위 × 재사용계약일 현재의 분담금 부과단가)

⑩ 제5조 제25호부터 제2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수급계약이 전부 해지된 후 새로이 열수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40조(분담금의 조정) ① 제39조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단가를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정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R = F \times (1 + i)$$

R : 조정 분담금 단가, F : 현행 분담금 단가, i :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단가와 비율은 분담금 고시 제6조에 따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분담금의 계산단위) ① 분담금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계약면적 : 1m^2 (제곱미터), 소수점 이하 절사
2. 연결열부하 : 1Mcal/h (메가칼로리/시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공동주택 및 공고지역 내 단독주택에서 급탕만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면적을 산정합니다.

1. 급탕 계약면적 : $(\text{단위급탕연결부하} \div (\text{단위난방부하} + \text{단위급탕연결부하})) \times \text{계약면적}$
2. 단위난방부하 및 단위급탕연결부하 : 열사용시설기준 적용
3. 계약면적 : 별표3 열요금표 주1) 준용

③ 분담금 계산금액에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제42조(분담금의 납부 및 납기일) ① 사업자는 분담금 청구서를 납기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송부하며, 납기일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영업일로 사업자가 지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사용자가 복수의 열매체를 공급받을 경우 청구서는 한 장의 청구서에 각 열매체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열매체별로 복수의 청구서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분담금(이자, 연체료를 포함합니다)을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기일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공고지역내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의

경우

가. 계약금 : 입주자의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중도금 : 입주자의 분할시기별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2.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고지역내 신축 공동주택 또는 후분양제
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 계약금 : 공동주택의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5등
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3. 공고지역내 신축 건물

가. 계약금 : 건물의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2등
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④ 공고지역 외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그 이외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 제3항 제3호를 준용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납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열수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열공급개시일이 변경되어도 분담금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
다.

1. 열공급개시일을 당초보다 앞당기는 경우

2. 공사중지가처분으로 인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변경이 있는 경우

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확

인이 되어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43조(분담금의 납부비율) ① 분담금의 납부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공고지역내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의 경우 : 총 분담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른 입주금 납부비율

2. 공고지역내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신축 공동주택 또는 후분양제도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가. 계약금 : 총 분담금의 20%

나. 중도금 : 총 분담금의 60%(15%씩 4회)

다. 잔금 : 총 분담금의 20%

3. 공고지역 내 신축 건물

가. 계약금 : 총 분담금의 20%

나. 중도금 : 총 분담금의 40%

다. 잔금 : 총 분담금의 40%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재사용 신축 :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준용

5. 공고지역 외 신축 공동주택 :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준용

6. 공고지역 외 신축 건물 : 제1항 제3호 준용

7. 증설사용, 변경사용, 재사용

가. 계약금 : 총 분담금의 20%

나. 중도금 : 총 분담금의 40%

다. 잔금 : 총 분담금의 40%

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납부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담금을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분담금을 일시납 또는 열공급개시일 이후에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공급개시일 이후에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전년도 집단에너지대출이자율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일수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건축물

2. 학교

3. 중앙난방방식(개별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과 건물

⑤ 제4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분담금과 이자는 요금과 함께 부과합니다. 다만, 학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이자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자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1년 단위로 재산정합니다.

제44조(분담금의 정정청구) ① 사업자는 분담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정정청구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하거나 선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가 분담금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사업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③ 사용자가 이의제기 후, 납기일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 분담금을 정정청구 할 경우 납기일은 정정청구서에 표시된 납기일로

변경됩니다.

제45조(분담금의 정산) ① 사업자는 분담금 정산을 위해 열공급개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를 확정하여야 하며, 열공급개시 후 증가되는 면적과 연결열부하는 증설 사용으로 처리합니다.

1. 신축 공동주택

가.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 열공급개시전 최종 제출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승인 통보한 열이 공급되는 면적

나. 발코니면적 :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난방면적의 합계기준)를 모두 합산한 면적

2. 주택용 이외 건축물 : 열공급개시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최종 승인 통보한 연결열부하(온수냉난방 - 동계연결열부하)

② 사용자가 발코니 계약면적 산출근거 서류 제출 시 건축물현황도 작성자가 작성 또는 확인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의 확정을 위하여 최종 설계도서를 열공급개시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열이 공급되는 세대발코니 합계면적을 계산한 최종 서류는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가 열수급계약 체결당시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분담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분담금 정산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정산금 납기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정산내역을 통지하고 납부 고지서를 송부합니다.

⑥ 사용자가 분담금 정산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일 다음날로부터 실 납부일까지 연체일수에 따라 제65조 제5항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⑦ 정산은 이미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산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거나 연체료를 반환해야 할 경우에는 제43조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⑨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한 경우에는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에 따라 사용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근거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요 금

제46조(요금의 적용개시일 및 계산) ① 요금은 열수급계약 및 열매체별로 1개월마다 계산하며, 열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적용합니다.

②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기본요금 :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열요금표(별표3)의 해당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온수를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냉방용에 대한 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 계약면적 = (각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

나. 계약용량 = 열교환기용량

2. 사용요금 : 사용열량에 요금표(별표3)의 해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③ 지식산업센터는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본요금 : 별표3 업무용

2. 난방사용요금 : 별표3 주택용

3. 냉방사용요금 : 별표3 주택용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합니다)에 부속된 주거용시설(열교환설비 및 계량기가 분리설치된 경우에 한합니다)이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우의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기본요금 : 별표3 공공용

2. 사용요금 : 별표3 주택용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축물내에 여러 개의 계약종별이 있는 사용자중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하는 사용자가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기본요금 : 열사용용도 비율별 적용 계약종별 기본요금의 합
2. 사용요금 : 주된 열사용용도 계약종별 사용요금 적용

⑥ 별표3의 요금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 등의 요청에 따라 사용연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요금적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47조(기본요금의 정산) ① 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후 최초 열요금 부과 시 신축 주택용 건축물에 대한 계약면적 확정 안내를 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안내를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제45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약면적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제39조 제5항에 따른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2. 제출기한 : 제1항의 안내를 받은 후 1개월이 되는 날과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③ 사업자는 사용자가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면적을 확정합니다.

1. 전용면적 :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대장 등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
2. 공용면적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용면적
3. 발코니면적 :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발코니면적

④ 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후 주택용 이외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최종 승인 통보된 열교환기용량 또는 냉동기용량을 확인하여 계약용량을 확정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해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이 열수급계약체결 당시에 비해 차이가 있을 경우 기본요금을 정산(기 부과된 기본요금에 따른 연체료 및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합니다)하고 열수급계약서의 내용을 정정합니다.

1. 사용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 정산내역통지와 함께 정산금 납기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사용자에게 납부통지하며, 정산금을 사용자가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일 다음날부터 일수에 따라 제65조 제5항에 따른 연체료 부과

2. 사용자가 납부한 요금을 정산하는 경우 : 정산내역통지와 함께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청구금액에서 정산하여 부과

⑥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정산한 계약면적과 실제 열공급이 되는 면적 합계의 차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사업자는 사용자 입회하에 현장실사 또는 실측을 통하여 면적을 확정하며 이 경우 열공급개시일로부터 기본요금을 정산합니다.

⑦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건축물의 처분, 관리업무의 인계 등과 함께 이전됩니다.

제48조(요금의 감면) ① 사업자는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의 요금을 다음 각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공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난방을 위해 열이 공급되는 기간을 난방 비수기 내로 제한하여 계

약을 체결한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30

나.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건축설비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30(단, 사업자가 인정하는 해당 건축설비 등과
관련된 요금에 한합니다.)

2. 난방비수기에 한하여 냉방시설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설립·운영규
정에 따른 부속병원은 제외합니다)의 경우 : 기본요금의 100분의 30

4. 기존공동주택에 최초 열공급을 위하여 시운전하는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10(이 경우 감면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난방비수기에 열공
급이 개시될 경우에는 10월 1일을 기산일로 합니다)

5. 공공용으로 계약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 경우 : 기본요금 전액

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사업주체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 최초 입주일로부터 기본요금
전액

7.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의 경우 : 주
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이 전체 호실의 70% 이상인 경우 : 사용요금의
100분의 20(다만, 냉방용 사용요금은 제외합니다.)

8. 제7호에 의한 요금감면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
산 합니다.

가. 주거용 비율 = 주민등록 전입 호실 수(數) ÷ 전체 오피스텔의 호실
수이며, 주민등록 전입호실 수는 전입호실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사업자에게 제출한 거주자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해 계산합니다.

나. 주거용 비율 계산시 백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올림합니다.

다. 주거용 비율은 반기별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이전월 말일 기준으로 제8호 가목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월별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9. ‘25년12월~ ‘26년3월 기간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별 월 3만 6천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차상위자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3호(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한부모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 세대별 월 3만 6천원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명 : 세대별 월 1만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세대별 월 1만원

마.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세대별 월 1만원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대별 월 1만원

라.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위탁아동을 포함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 3명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세대별 월 8천원

10. 제9호에 의한 감면은 사업자가 정한 신청기간 내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큰것만 적용합니다.

제49조(특별요금감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요금을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용자 중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침수로 인하여 열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2.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의거 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50조(위약금 등)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요금 등의 산정자료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분담금, 그 밖에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금(이 규정에서 이자의 부담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합니다.)만을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요금

(정당하게 계산되었어야 할 열사용량 - 이미 계산된 열사용량) × 부담하게 열을 사용한 기간별 해당 요금단가

2. 분담금

(정당하게 계산되었어야 할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수급계약

서상의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 × 열수급계약 체결 당시의 분담금
단가

3. 그 밖의 비용

정당하게 납부하였어야 할 비용 - 이미 납부한 비용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하게 계산되었어야 할 열사용량”을 산정할 때의 기간은 사업자가 확인한 기간으로 하며, 사업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④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계량기, 원격검침설비 등)이 고장 또는 파손되어 이를 수리 또는 신규설비로 교체해야 할 경우 실소요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51조(요금의 조정) ① 사업자는 요금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여 열요금표(별표3)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제52조(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조정)
2. 제53조(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 변동에 따른 요금조정)
3. 제54조(요금정산)
4. 제58조(그 밖의 요금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열요금을 변경할 경우, 단위당 총괄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제1항 제4호의 요금변경을 반영한 단위당 총괄원가를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에 의거한 열요금 상한과 비교하여, 단위당 총괄원가가 상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도록 열요금을 변경해야 합니다.

1. 단위당총괄원가 = 연료비원단위 +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 원단위 + 정산원단위
 2. 연료비원단위 : 제52조에 따라 산정하고 열요금에 적용한 원단위
 3.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 원단위(이하 “고정비원단위”라 합니다) :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제9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제53조에 따라 산정하고 열요금에 적용한 원단위
 4. 정산원단위 : 제54조에 따라 산정하고 열요금에 적용한 원단위
 5. 열요금상한 :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제9조 제1항에 따른 열요금상한
- ③ 요금조정시 계약종별 및 기본요금과 사용요금간의 배분, 온수 냉방용 요금은 요금구조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조정률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⑤ 정산원단위 적용기간 종료 후 예상 열판매량과 실적 열판매량의 차이는 재정산합니다.

제52조(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조정) ①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료비연동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text{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text{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times (1 + \text{연료비연동조정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비연동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요금조정률 =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민감도
2.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천연가스공급규정 (별표3) “도시가스요금 원

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변동요인 발생 시,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가스 주택용, 일반용 소매요금 기준 평균 요금조정률

3. 민감도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중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③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에게 지불한 비용의 합계액 +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합계액

④ 제3항의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는 직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공통연료비의 회계분리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제9조 제8항에 따라 배부합니다.

⑤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1.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2. 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량 중 천연가스 요금에 연동하여 지불하는 수열비
3. 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을 생산하는 시설의 주연료가 천연가스인 경우의 수열비

⑥ 제2항 제3호의 “민감도”는 연 1회 산출하며, 해당연도 7월1일부터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산시기 등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제51조 제2항에 따른 연료비원단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연료비원단위 = { (직전 단위당총괄원가) × (1 + 연료비연동조정률 × q) } - (직전 단위당총괄원가 - 직전 연료비원단위)
2. 직전 단위당총괄원가 : 직전 요금 변경 신고시 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고 적용한 단위당총괄원가

3. 직전 연료비원단위 : 직전 요금 변경 신고시 제1호에 따라 산정하고 적용한 연료비원단위

4. 연료비연동조정률 : 제52조 제2항에 따른 당기 연료비연동조정률

5. q :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의 열매출액 중 난방용 사용요금 실적비율

⑧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는 제2항 제2호의 조정률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시기를 익월로 변경하거나 차기 열요금 조정일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1. 본조 제1항에 따른 요금 조정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도시가스 요금이 조정월 1일 이외의 날에 조정되는 경우

⑨ 사업자는 국제유가 또는 환율 등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 시,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동제를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단, 사업자는 연동제 유보로 인해 조정되지 않은 요금은 향후 시장 환경을 감안하여 열요금에 반영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 변동에 따른 요금조정)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에 의거하여 일정주기마다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이하 “고정비”라 합니다)를 산정하여 열요금표(별표3)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정비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고정비조정률(%) = { (고정비 조정 단위당총괄원가-직전 단위당총괄원가)/직전 단위당총괄원가 } × 100

2. 직전 단위당총괄원가 : 제52조 제7항 제2호의 원단위
 3. 고정비 조정 단위당총괄원가 : 직전 단위당총괄원가 + (당기 요금조정에 적용할 고정비원단위 - 직전 요금 변경 신고시 적용한 고정비원단위)
 4. 고정비원단위 :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에 따라 산정한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의 원단위
- ③ 제1항에 따른 열요금의 조정은 1년을 주기로 해당연도의 7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열요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를 우선 시행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요금을 조정한 이후에 사용요금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제54조(요금정산) ① 사업자는 제52조에 따른 요금조정으로 발생하는 연간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정산을 실시합니다.

② 사업자는 제5항의 정산조정률을 적용하여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text{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text{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times (1 + \text{정산조정률}/q)$$

③ 제2항에 따른 “q”는 제52조 제7항 제5호의 열매출액 중 난방용 사용요금 실적비율을 의미합니다.

④ 전년도 정산금액은 직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text{정산금액(원)} = \text{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text{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

2.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제52조 제4항에 따라 산정
3. 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 = 연간 열판매수익(정산분 제외)
- (고정비원단위 × 연간 열판매량)
- ⑤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산조정률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1. 정산원단위(원/Gcal) = 제4항에 따른 정산금액 ÷ 해당연도 예산서 기준으로 추정한 정산원단위 적용기간의 예상 열판매량
 2. 해당연도 예산서 : 제3호의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시점의 사업연도 예산서
 3. 정산조정률(%) = { (정산원단위-기간만료 정산원단위) ÷ 직전 단위당 총괄원가 } × 100
 4. 직전 단위당총괄원가 : 제52조 제7항 제2호의 원단위
 5. 기간만료 정산원단위 : 이전의 요금정산 시기에 제8항에 따라 정산조정률을 적용하기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정산원단위
- ⑥ 동조의 요금정산에 따른 정산조정은 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정산조정률을 해당연도 7월1일부터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산조정의 적용시기 및 적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⑦ 제51조 제5항에 의한 재정산 금액과 제54조 제6항에 따른 정산조정 적용기간 변경에 의한 분할정산 금액은 제54조 제4항에 따른 전년도 정산금액에 가감하여 적용합니다.
- ⑧ 제5항에 따른 정산조정률은 ±1%이상일 때만 적용하며,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요금조정기준일에 미반영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기 요금조정 또는 정산조정시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제55조(시장기준요금) ① 시장기준요금은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사업자는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장기준요금 준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가 시장기준요금을 산정하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는 시장기준요금에 해당하는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의 110% 범위 내에서 요금표(별표3)중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시장기준요금 준용을 위해 요금조정을 및 요금조정시기 등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요금 조정절차) 사업자는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8조에 따른 요금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52조에 대해서는 제1호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1. 요금조정내역에 대한 검증기관의 사후검증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열공급규정 개정신고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이용한 고객에 대한 열요금 조정 사전통보와 사후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보

제57조(요금 검증) ① 사업자는 열요금 조정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공급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산정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열요금 검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요금조정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③ 제55조를 준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8조(그 밖의 요금조정) ① 사업자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제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제52조의 규정 이외에 국제유가, 환율, 전기요금의 조정 등 연료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2.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관리형요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4. 사용연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담금 등이 변경되어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여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열공급규정을 수리한 날로부터, 제5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제59조(수요관리형요금제도) ① 사업자는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계절별 차등요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수요관리형요금제도는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중 희망하는 사용자에게 대해 연간단위로 적용합니다.

③ 수요관리형요금제도는 별표 3에 따라 사용요금에서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다음 호와 같습니다.

1. 계절별 차등요금

가. 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

나. 적용기간 : 춘추절기(3월1일~5월31일, 9월1일~11월30일), 하절기(6월1일~8월31일), 동절기(12월1일~다음해 2월말일)로 구분

다. 적용요금 : 요금표(별표3)

라. 적용기준 : 해당 월 검침분을 적용

④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지식산업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주거용부분에 대해서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 제1호의 계절별차등요금제는 냉방용 사용요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0조(검침일) ① 검침은 사용자별로 정기검침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검침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2. 일수계산을 해야 할 경우 일수계산일 또는 그 다음날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검침이 가능하게 된날

② 정기검침일은 매월 말일로 합니다.

③ 검침시간은 정기검침일의 자정(밤 12시)으로 하며,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의 검침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의 사정으로 검침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63조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열사용량을 산정하고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검침이 가능하게 된날이 속한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검침일에 계량기로 검침하여 정산합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과 관련하여 환급해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급하거나 요금을 선납하는 것 중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처리하고,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을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이자의 적용은 없습니다.

⑥ 제53조 제3항 및 제54조 제6항에 따라 요금 적용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기검침일 외에 추가검침을 합니다.

제61조(검침방법 및 열사용량의 계량) ① 검침은 원격검침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의 입회하에 계량기에 따른 검침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계량기에 따른 검침을 할 경우, 검침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2통 작성하여 각각 보관합니다.

③ 원격검침을 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계량기로 검침을 합니다. 이 경우 계량기로 검침한 결과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0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④ 열사용량은 정기검침일에 계량기 또는 원격검침기의 지침위치를 읽음으로써 계량하며, 계량한 열사용량을 검침기간의 열사용량으로 합니다.

⑤ 하나의 열수급계약에 여러 개의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계량기를 계량한 것의 합을 열사용량으로 합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위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읽습니다.

제62조(요금의 계산기간) 요금의 계산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침일로부터 해당월의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검침기간을 1개월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 검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열공급 개시일로부터 최초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의 정기검침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3. 일수계산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기간
4. 제60조 제3항의 단서 또는 제60조 제6항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기간

제63조(계량기 고장 등의 경우에서 열사용량의 계량) ① 계량기·원격검침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열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사업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열사용량을 산정(이하 ‘조정’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가 조정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열사용량이 합의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열사용량을 산정합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계량기의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로 실사용일수가 전후 각 5일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적에 의한 경우 :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사용량 ÷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사용일수) × 대상일수
2. 계량기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실적에 의한 경우 :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따른 실사용량 ÷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따른 실사용일수) × 대상일수
3. 사용설비와 사용기간에 의하는 경우 : 사용설비용량(kcal/h) × 1일사용시간 × 대상일수
4. 단위면적당 열소비량에 의하는 경우 : 계약면적(㎡) × 단위난방면적당 연간열소비량(Gcal/㎡) × 해당월의 소비비율 × (대상일수 ÷ 월력에 의한 해당월의 일수)

② 제1항에 따라 열사용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기온을 보정합니다.

1. 온수를 난방용, 급탕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의 보정계수

$1 - [(\text{조정기간동안의 평균기온} - \text{정상작동기간동안의 평균기온}) \div \{20^{\circ}\text{C} - \text{설계기준온도}(-12^{\circ}\text{C})\}]$

2. 온수를 냉방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의 보정계수

$1 + [(\text{조정기간동안의 평균기온} - \text{정상작동기간동안의 평균기온}) \div 28^{\circ}\text{C}(\text{실내냉방권장온도})]$

③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열사용량과 산출내역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열사용량 산정 방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서면으로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재조정된 열사용량과 산출내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 다음 달 열요금 부과 시 통지된 조정열사용량에 해당하는 열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재조정 결과 통지 후 14일이 경과한 때

⑥ 제5항에 따라 조정 열사용량에 해당하는 열요금을 정산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부과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동절기(12월)를 기산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64조(요금의 납부) ① 요금의 납부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에 발생합니다.

1. 열수급 계약기간 동안에는 정기검침일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② 납기일은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발생일로부터 1개월 1일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정합니다. 다만, 납기일이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의 다음날까지로 연장됩니다.

③ 사업자는 납기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요금청구서를 발송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이후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의 예금계좌로부터 사업자의 예금계좌로 이체(이하 “자동이체”라 합니다)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통장잔액 한도 내에서 부분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제65조(연체료) ① 사업자는 고객이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경우의 통지는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가 납기일(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연체료”라 합니다.)을 다음월의 납기일(이하 “연체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미납 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text{연체료} = \text{미납요금} \times 2\% \times (\text{미납일수} \div \text{해당월의 일수})$$

③ 사업자는 납부하지 않은 요금과 연체료를 납기일 경과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기일에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가 분담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 까지의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변제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이에 준하는 결정, 명령, 판결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일로부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가산금 등) 제2항 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⑥ 공고지역 내 사용자가 열사용신청서를 제6조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하여 제42조 제3항의 정상납기일을 초과한 경우, 분담금 계약금에 대한 연체료를 제5항에 따라 지연일수만큼 열수급계약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일에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제66조(일부납부에 따른 처리) ①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요금, 분담금(분할금)과 이자, 연체료중 그 일부만 납부한 경우, 부과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 분담금

가. 연체료

나. 이자

다. 분담금 원금

2. 분담금 분할금

가. 연체료

나. 이자

다. 분담금 분할금

3. 요금

가. 연체료

나. 요금

② 분담금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할 사용자가 그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각각 부과금액에 비례하여 납부한 것으로 하여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7조(이의제기 및 재부과) ①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납기 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이의가 타당한 경우 : 검토 결과 통지 및 청구서 재발송
2. 이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 검토결과 통지 및 당초 납기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을 초과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이의가 타당한 경우 : 검토결과 통지 및 검토 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청구금액에서 정산하여 부과
2. 이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 검토결과 통지

③ 사업자는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 납기일을 변경하여 납기일 20일 전까지 청구서를 발송해야 하며,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초의 납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청구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용자가 즉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제71조 제1호의 이자를 해당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⑤ 사업자가 요금부과를 잘못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부과내역을 정정하여 재부과합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68조(보증금)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자는 3개월분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한 후 열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보증, 지급보증,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제24조에 따라 열공급이 정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2. 1년 이내에 3회 이상 요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요금, 분담금, 그 밖에 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아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요금, 분담금, 그 밖에 비용 등의 납부에 대하여 소유자의 연대보증없이 실사용 사용자 명의로 열사용을 신청한 경우
5.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사용자가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할 예정인 경우
6. 체납에 의해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사용자가 동일 장소에 다시 열사용 신청을 한 경우
7. 열교환기용량 중에서 급탕용량의 구성비가 60% 이상인 사용자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3개월분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보증금산정은 산정시점의 열요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1. 산정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3개월의 요금을 합산한 금액(단, 온수를 열매체로 하여 난방용과 냉방용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방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산정 직전연도 1년간의 요금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③ 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3

호, 제4호의 경우에는 열수급계약 종료일까지, 제5호의 경우에는 분양등
기 완료일까지로 합니다.

④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보증기간에 요금을
연 2회 이상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예치 또는 보증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1년 단위로
지급합니다.

⑤ 현금으로 예치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제71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합니
다.

⑥ 현금으로 보증금을 예치한 사용자가 열요금 체납으로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보증금에서 체납 열요금(연체료를 포함합니다)을
우선 상계처리 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상계처리 후 보증금 잔액이 남은 경우 : 사용자에게 환급

2. 체납 열요금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 추가로 납부

⑦ 사업자는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치 또는 보증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증금을 사용자에게 통
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예치 또는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사
업자가 통지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제69조(일수계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
니다.

1. 열공급이 개시된 경우, 증설사용의 경우, 변경사용의 경우

2.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요금이 변경된 경우

4. 검침일이 변경된 경우

5.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실제 검침한 날이 5일을 초과한 경우

6. 공급중지 및 열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

7.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8. 그 밖에 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수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사용일수에는 공급개시일, 증설사용일, 변경사용일 및 제23조 제1항에 따른 열공급개시예정일을 포함하고, 열수급계약해지일, 공급중지일, 사용제한일 및 제23조에 따른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은 제외합니다.

③ 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기본요금 $\times$ (사용일수 $\div$ 해당월의 일수)

제70조(요금의 계산단위 등) ① 요금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계약면적 : 1m^2 (제곱미터)

2. 계약용량 : 1Mcal/h (메가칼로리/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계산단위를 산정할 때 면적은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용량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③ 요금의 부과금액에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제71조(이자의 지급)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보증금, 요금 등을 환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1. 예치기간 :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직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으로 작성된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금리의 평균금리

2. 예치기간 이외의 기간 :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직전년도 예금은행 가중

평균 수신금리 중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에 해당하는 금리의 평균금리

제7장 열사용에 따른 사용자 의무

제72조(열사용시설기준) 열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열수급계약체결시에 사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73(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제72조에 따른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열사용시설을 설치,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열사용 시설 내에 설치된 사업자의 열공급시설을 손상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사업자의 열사용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치와 자료제출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④ 사용자는 열사용시설내에 설치된 계량기, 원격검침설비, 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신호전송장치 등 사업자의 열공급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력 사용 요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연 1회 요금에서 상계합니다.

⑥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연결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⑦ 사용자는 제6항에 따른 공사 완료 후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8장 열사용에 따른 안전

제74조(안전관리 책임한계) ① 열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은 사업
자이, 열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시설 유지보수의 책임은 재산한계점과 일치합니다. 다만, 사용자 시
설내에 설치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5조(통지) ① 사업자는 열공급시설에 누수, 온도 및 압력 이상 등 비정
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열공급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열사용시설과 열사용시설내에 설치된 열공급시설에 누수,
온도 및 압력 이상 등이 발생하여 열공급 또는 열공급시설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열사용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등으로 인해 열공급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리 사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6조(열사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권고) ① 사업자는 기계실 설비의
누수·부식·고장 등 안전을 위해하는 사항을 연1회 점검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자가 요청
할 경우 안전점검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열사용시설에 대한 개선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열사용시설이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열사용시설로 인하여 열공급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열사용시설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9장 사용자정보의 보호

- 제77조(사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①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체결, 분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열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사용자 개인정보의 수집은 열공급 및 열사용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② 사용자 개인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해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사업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집목적,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받는 자 및 그 밖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 ④ 사업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열수급계약 및 이에 따른 비용정산, 그 밖에 이 따른 열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시장조사 또는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용자 및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법률의 따른 경우
- ⑤ 사업자는 사용자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 ⑥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받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

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제78조(영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① 사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의 사실

2.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② 사업자가 제3자에게 사용자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서면·전자우편으로 하거나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두개 이상의 중앙일간지 또는 공급구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기타

제79조(문서의 보존) 사용자는 열사용과 관련된 문서 중 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문서는 3년간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제80조(규정의 공표 및 중요정보의 고지) ① 사업자는 이 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사용자에게 안내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 규정을 사용자가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열사용시설기준 변경 등 사용자와 관련된 중요정보의 변동 사항 발생시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제8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열 공급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증명하여 사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범위를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사용자는 사업자가 제1항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1항의 청구를 하지 않고 다음 각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2. 소송

③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재신청의 경우 사업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법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72조와 제73조를 위배하여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원상회복과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82조(손해배상의 면책) 제81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2. 제24조에 따라 열공급이 정지된 경우
3.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열공급을 중지 또는 열 사용을 제한한 경우
4.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열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시, 해당 사업관련 인·허가 문제, 민원 등으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어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6. 사업자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에 열공급이 개시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중지된 경우

제83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부 칙(2026. 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조(적용례) ① 제23조 제1항 및 제5항은 최초 열공급개시예정일이 2026년 8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② 제73조 제5항은 2026년 8월 1일 이후 검침량부터 적용합니다.

[별표 1]

계약종별 분류표

계약종별	적 용 대 상
주 택 용	○ 공동주택 및 공고지역내 단독주택
업 무 용	○ 주택용 또는 공공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외의 건축물
공 공 용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 ○ 학교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의료시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포함),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부속병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그 밖의 공공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률·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소유 및 운영하는 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을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위탁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 경우

- 주 1. 계약종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결정은 사업자가 합니다.
2. 계약종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구분)을 준용하여 결정하며,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계약종별을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부속시설(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계약종별은 주된 시설의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위탁한 경우에도 공공용으로 계약종별을 결정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동 부분이 구분될 경우에는 구분되는 부분만이 해당됩니다)에는 업무용으로 계약종별을 정합니다.
5.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계약종별의 적용은 위의 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별표 2]

분담금 부과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종별		단 위	단 가		비고
주택용	신축	계약면적 1㎡	14,040		
	기존		7,050		
업무용	신축	연결열부하 1Mcal/h	0~300Mcal/h	167,630	
			301~1,000Mcal/h	131,360	
			1,001~3,500Mcal/h	126,180	
			3,501Mcal/h 이상	110,630	
	기존	연결열부하 1Mcal/h	0~300Mcal/h	96,740	
			301~1,000Mcal/h	82,290	
			1,001~3,500Mcal/h	79,050	
			3,501Mcal/h 이상	69,300	
공 공 용	학교, 사회복지시설	신축	88,500		
		기존	52,300		
	그 이외	연결열부하 1Mcal/h	0~300Mcal/h	150,860	
			301~1,000Mcal/h	118,220	
			1,001~3,500Mcal/h	113,560	
			3,501Mcal/h 이상	99,570	
			0~300Mcal/h	87,060	
			301~1,000Mcal/h	74,050	
			1,001~3,500Mcal/h	71,140	
			3,501Mcal/h 이상	62,370	

- 주) 1.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열공급이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포함합니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속병원에 대한 분담금은 공공용 중 “그 이외”에 적용되는 단가를 적용합니다.

[별표 3]

열요금표(2024. 7. 1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종별	기본요금	사용요금
주택용	계약면적 m ² 당 52.40원	- 단일요금 : Mcal당 112.32원 - 계절별 차등요금 • 춘추절기 : Mcal당 110.04원 • 하 절 기 : Mcal당 99.02원 • 동 절 기 : Mcal당 115.59원
업무용	열교환기용량 1Mcal/h당 396.79원	- 단일요금 : Mcal당 145.82원
공공용	열교환기용량 1Mcal/h당 361.98원	- 단일요금 : Mcal당 127.34원

주1)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세대별 발코니 확장면적의 합계 및 공용면적 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함(다만,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포함함)

주2)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 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중 계절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 적용기간
 - 춘추절기(기준단가) : 3~5월, 9~11월
 - 하절기 : 6~8월
 - 동절기 : 12월~다음해 2월

[별표 4]

단위연결열부하 기준표

(단위 : kcal/m²·h)

구 분		난방	급탕	합계	비 고
공동주택	아파트	36.2	15	51.2	전용면적 60㎡ ~ 85㎡ 이하 기준
	연립주택	39.5	15	54.5	전용면적 85㎡이상 기준
근린생활시설		86	5	91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지식산업센터 포함
근린공공시설		89	7	96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 우체국
종교시설		115	2	117	
노약자시설		86	7	93	유치원, 노인정
의료시설		105	25	130	병원급 이하
교육연구시설		89	5	94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 (업무·공공)		86	7	93	
숙박시설		89	45	134	
판매시설		98	5	103	
위락시설 (특수목욕탕)		110	80	190	목욕장 이외의 시설은 판매시설 기준 적용
관람집회시설		115	2	117	
전시시설		115	2	117	

- 주) 1.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난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2.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며, 그 밖의 사항은 열사용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3. 복합용도의 건축물에는 용도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4. 단독주택의 단위연결열부하는 난방 63kcal/m²·hr, 급탕 12kcal/m²·hr를 적용하되, 건축환경 및 단열기준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실계산부하를 검토·보완 후 적용합니다.
 5. 공동주택의 세부난방 단위연결열부하는 열사용시설기준 제8조 표1을 적용합니다.

별 지 서 식

(앞면)

열사용신청서

신청구분
신축 ☐ 기존 ☐

☐ 열사용신청

신청인 ^{주1} 참고)		주 소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사용장소		명 칭	

☐ 건축물현황

공동주택	전용면적 ^①		m ²	세대발코니 확장면적 ^②		m ²	
	세대수(호)			기계실수		동수	
	부대 복리 시설	명 칭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그 밖의 시설	
		건축허가연면적	m ²	m ²	m ²	m ²	
		열공급면적 ^③	m ²	m ²	m ²	m ²	
건 물	건축허가연면적		m ²	열부하		Mcal/h	
	열사용용도		난방 ☐ 냉방 ☐	기계실수		동수	

☐ 신청사항

공급열매체		열공급개시요청일	
-------	--	----------	--

☐ 사업자 기재사항

접수일		주택용 계약면적 ^{①+②+③}	m ²
사용자번호		열공급개시예정일	
계약종별	주택용 ☐ 업무용 ☐ 공공용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65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인)

신청인 2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주1)

공동주택	신축	○ 사업주체의 명의(사업주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또는 사업주체와 사업시공자 공동명의 ○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 위·수탁자 공동 명의
	기존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등 이에 준하는 자
건물	신축	○ 건축주, 시행사 등 이에 준하는 자 및 시공사 공동명의 ○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 위·수탁자 공동 명의
	기존	○ 소유자(임시)관리인 포함) 및 열요금 납부주체의 공동명의(원칙) ○ 관리단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위주로 건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 위주의 사단·조합 명의(열요금 납부주체와 명의가 다른 경우는 열요금 납부주체와 공동명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소유한 건물을 하위 행정관청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에는 하위 행정관청의 명의(하위 행정관청에 준하는 자를 포함)

※ 신축의 경우

사업주체 및 사업시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하나의 건축물 안에 두가지 이상의 용도를 복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각각의 계약종별로 구분한 명의

<열사용신청시 구비서류>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발코니,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6.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 팸플릿 포함)
7.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설계도서
 -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에 따른 설계도서 접수일은 일체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날을 접수일로 합니다.
8. 그 밖에 사업자가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기타안내사항>

※ 분담금은 열공급개시일 이후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전용 및 공용면적 : 사용자가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업자가 검토하여 승인 통보한 열공급이 되는 면적으로 정산 완료
- 발코니면적 :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 이전에 사용자가 제출한 열이 공급되는 발코니 합산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근거로 정산 완료

(앞면)

열수급계약서

신청구분
신축 ☐ 기존 ☐

사용자번호		명 칭	
소재지			
계약종별	주택용 ☐ 업무용 ☐ 공공용 ☐	열공급개시예정일	
열사용용도	난방 · 급탕 ☐ 냉방 ☐	요금납기일	
검침일		계약기간	
재산한계점			

☐ 공동주택(주택용)

기계실수		계약면적	m ²
------	--	------	----------------

☐ 건물(업무용 · 공공용)

기계실수					
계약 용량 Mcal/h	온수		연결 열부하 Mcal/h	온수	(하계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3. 사용자는 다음 각목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사업자에 통지해야 합니다.
 - 가. 공동주택 : 신축의 경우 사업주체의 변동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인계 및 그 밖에 사용자관련 변동, 기존의 경우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변동
 - 나. 건물 : 관리단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9조에 따른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경우,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이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6.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 분담금과 제6장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7.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항목별로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가.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
 - 나. 규정 제23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연기한 경우에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뒷면)

8.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9.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의 해지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10.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 분담금, 그 밖에 이 열공급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11.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열수송관 건설공사(사용자간 연결공사를 포함합니다),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와 공간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2. 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건축물의 처분과 함께 이전됩니다.
13. 열공급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규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릅니다.
14. 열수급계약 체결 이후에 사용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공고지역) 또는 사업자와 협의(공고지역 외 지역)없이 타 열생산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사업자는 규정 제68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열공급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16. 본 계약은 만료 1개월 이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주요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에 동의하며, 주요 계약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사업자에 문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 주택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인)	연락처	
	주 소			
	사업시공자 (또는 주택관리업자)	(인)	연락처	
	주 소			
건 물	건축주 (또는 소유자)	(인)	연락처	
	주 소			
	시공자 (또는 실 사용자)	(인)	연락처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인)	연락처	
주 소				
※ 계약자 명의 · 공동주택 : 신축의 경우 사업주체 및 사업시공자 공동명의, 기존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 · 건물 : 신축의 경우 건축주 및 시공자 공동명의, 기존의 경우 소유자 및 사용자(관리업체) 공동명의				
년 월 일				

사용자명의변경신청서

신청구분
공동주택 ☐ 건물 ☐

☐ 공동주택

사용자번호			사용자명		
변경전	입주자 대표회의	명 칭	(인)	고유번호	
		주 소	(연락처 :)		
	주택 관리업자	명 칭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변경후	입주자 대표회의	명 칭	(인)	고유번호	
		주 소	(연락처 :)		
	주택 관리업자	명 칭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건 물

사용자번호			사용자명		
변경전	소유자	명 칭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실사용자 (관리인)	명 칭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변경후	소유자	명 칭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실사용자 (관리인)	명 칭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신청사항(공통)

명의변경 사유		명의변경요청일	
---------	--	---------	--

☐ 사업자 기재사항

공급 열매체		접수일	
계약종별	주택용 ☐ 업무용 ☐ 공공용 ☐	명의변경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명의변경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명의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안내

<공동주택>

1. 고유번호증 및 관리업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 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입주자동의서, 관리주체 계약서 등 명의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건 물>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 시)
2. 관리단구성현황 및 위탁관리업체 선임결의서(또는 관리인 선임계약서)
3. 명의변경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명의변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

□ 증설 · □ 변경 · □ 재사용 신청서

신청구분	
공동주택	□ 건물 □

□ 신청인

사용자번호				사용자명	
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명 칭	(인)	고유번호	
		주 소	(연락처 :)		
	주택 관리업자	명 칭	(인)	고유번호	
		주 소	(연락처 :)		
건물	소유자	명 칭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실사용자 (관리인)	명 칭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신청사항

증설 · 변경 · 재사용 사유			공급요청일	
구분	신청 전		신청 후	
	계약면적	계약용량	계약면적	계약용량
계약종별	주택용 □ 업무용 □ 공공용 □		주택용 □ 업무용 □ 공공용 □	
공동주택	m ²		m ²	
부대복리시설	m ²		m ²	
건물		Mcal/h		Mcal/h

□ 사업자 기재사항

공급 열매체		접수일	
계약종별	주택용 □ 업무용 □ 공공용 □	공급예정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을 귀사에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본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조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안내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공동주택만 해당),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유자와 실사용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4.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동의서
5. 열사용시설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6. 그 밖에 증설사용(변경사용, 재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열수급계약 ☐ 해제 · ☐ 해지 신청서

신청구분
공동주택 ☐ 건물 ☐

☐ 공동주택

사용자번호			사용자명	
입주자대표회의	명 칭	(인)	고유번호	
	주 소	(연락처 :)		
주택관리업자	명 칭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해제 · 해지 사유				

☐ 건 물

사용자번호			사용자명	
소유자	명 칭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실사용자 (관리인)	명 칭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해제 · 해지 사유				

☐ 사업자 기재사항

공급 열매체		접수일	
계약종별	주택용 ☐ 업무용 ☐ 공공용 ☐	해제 · 해지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열공급규정에 따라 열수급계약을 해제합니다.

1. 신청인은 열수급계약의 해제에 따라 분배관공사비용, 계량기 및 원격검침설비 설치비용 등 귀사가 열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제1호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납부한 분담금보다 클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겠습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열공급규정에 따라 열수급계약을 해지합니다.

1. 신청인은 열수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요금 그 밖의 열공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2. 신청인은 열수급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귀사가 열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다른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급구역내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귀사가 열공급시설을 존치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안내

<공고지역 사용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열생산시설의 설치허가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업무 인계 통지서

(☐ 공동주택관리업무 인계 ☐ 주택관리업자 선임·변경 ☐ 관리인 선임·변경)

신청구분	
공동주택 ☐	건 물 ☐

신청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				
	주 소		(연락처 :)		
통지 내용	변 경 전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변 경 후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관리업무인계·주택관리자(관리인) 선임·변경일					

☐ 사업자 기재사항

공급 열매체		접수일	
계약종별	주택용 ☐ 업무용 ☐ 공공용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 사에 관리업무·관리자 선임·인계·변경을 통지합니다.

1. 열공급규정 제11조에 따라 관리업무·관리자 선임·인계·변경을 통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선임·인계·변경된 관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2. 선임·인계·변경된 관리업자는 사업자의 열공급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선임·인계·변경된 관리업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안내

1. 선임·인계·변경된 자의 사업자등록증, 2. 선임·인계·변경 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	호	점 검 필 증			
사 용 자	① 상 호 (명 칭)				
	② 주 소 (소 재 지)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전 화 번 호		
⑤ 점 검 대 상 열 사 용 시 설 소 재 지					
⑥ 점 검 대 상 열 사 용 시 설					
⑦ 점 검 연 월 일					
⑧ 점 검 자	소 속		성 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열사용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기에 이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 ○ (인)					

확약서

건물명				건물소재지			
건축주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시공사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축물현황		건축허가연면적		m ²	열부하		Mcal/h
		열사용용도		☐ 난방, 급탕 ☐ 냉방		충수/기계실수	
		건축물용도			열공급개시요청일		
분양 및 임대계획							
건물관리계획							
건물사용계획 (층별·용도별)							
확약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약하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귀사에 납부해야 할 요금을 건물 입주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 열공급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건물내에 입주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설립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여 요금납부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부터 7일 이전까지 사업자에 통지하겠습니다. 5. 열수급계약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열사용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약인 건축주 : _____ 시공사 : _____ (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주) 동일한 층을 여러 개의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 분할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열사용량 확인서

사 용 자 명 :

용도	열량계	지침	기기번호			
☐ 난방	연산부	Gcal				
☐ 냉방		m ³				
	유량부	m ³				
☐ 난방	연산부	Gcal				
☐ 냉방		m ³				
	유량부	m ³				
☐ 난방	연산부	Gcal				
☐ 냉방		m ³				
	유량부	m ³				
☐ 난방	연산부	Gcal				
☐ 냉방		m ³				
	유량부	m ³				
☐ 난방	연산부	Gcal				
☐ 냉방		m ³				
	유량부	m ³				
비 고	☐ 전원 불량 ☐ 케이블 상태 불량 ☐ 원격모뎀 불량 ☐ 연산부 불량 ☐ 유량부 불량 ☐ 봉인손상으로 교체 기타사유 :					
상기와 같이 적산열량계 지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			(인)			
점검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